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
----------	----

제출연월일 : 2010. 1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필요 사항을 신설하고, 현 실정에 맞게 관련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을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수정(안 제1조)
- 나. “관람료” 정의 추가(안 제3조)
- 다. 사용료 감면의 경우를 전액감면 및 50퍼센트 감면되는 경우로 구체적 명시(안 제12조제2항)
- 사용료 전액이 감면되는 경우
 - 국가·도·군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공연 또는 일반행사
 - 국가·도·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활동
 - 사용료의 50퍼센트가 감면되는 경우
 - 사용자가 공연연습이나 무대·전시설비 및 행사준비와 설비물의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군 지역 밖의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행사
 - 군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자선행사
- 라. 사용료 반환의 경우를 전액반환 및 50퍼센트 반환되는 경우로 구체적 명시(안 제13조)
- 전액 반환되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때

- 허가사용일 10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했을 때
- 50퍼센트 반환의 경우
 - 허가사용일 5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마. 문화예술회관 사용자가 그 사용 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안 제14조)
- 바.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중 부대시설 사용료 추가 (안 제11조)
 - 피아노 (20,000원)
 - 무대조명 (대공연장20,000원, 소공연장10,000원)
 - 음향시설 (음향반사판20,000원, 판마이크20,000원, 무선마이크 10,000원)
 - 빔프로젝트 (10,000원)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2010. 6. 21. ~ 7. 11(20일간), 제출되 의견없음
- 마.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문화예술길51(중부리 596-4)에 둔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관”이란 공연장, 야외무대, 회의실, 향토자료실, 전시실과 그 부대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한다)영화 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다만, 단순한 취재 행위는 제외한다.
3.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운영·관리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본사용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할 경우에도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사용료 전액이 감면되는 경우

가. 국가·강원도(이하 “도” 라 한다)·평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공연 또는 일반행사

나. 국가·도·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활동

2. 사용료의 50퍼센트가 감면되는 경우

가. 사용자가 공연연습이나 무대·전시설비 및 행사준비와 설비물의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군 지역 밖의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행사
다. 군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자선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되는 경우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나.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때

다. 허가사용일 10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했을 때

2. 50퍼센트 반환의 경우

가. 허가사용일 5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회관의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발매목적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관람권 등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판매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검사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하며,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10퍼센트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사용료(제11조제2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공 연 장	오전	50,000	1. 1회 단가임 2. 토요일의 오후와 야간 및 공휴일의 공연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3. 익일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철야 포함) 작업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오후	70,000	
	야간	100,000	
전 시 실	1일	20,000	1일(09:00 ~ 21:00)
소공연장	1회	30,000	토요일의 오후와 야간 및 공휴일의 공연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야외무대	1회	30,000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기 준	요 금	비 고
악 기	피아노	1 회	20,000	- 피아노 조율료는 사용자 부담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
무대조명	대공연장	1 회	20,000	- 행사만을 위한 대관시 무대조명사용료 면제
	소공연장	1 회	10,000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 회	20,000	
	핀마이크	1 회	20,000	
	무선마이크	1 회	10,000	
	빔프로젝트	1 회	10,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치)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은 평창읍 중부리 산66-6번지에 둔다.</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관"이라 함은 공연장,야외무대, 회의실,향토자료실,전시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포함),광고게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한다),영화 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다만,단순한 취재 행위는제외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p><신 설></p>	<p>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치)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은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문화예술길51(중부리 596-4)에 둔다.</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관”이란 공연장, 야외무대, 회의실,향토자료실, 전시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한다)영화 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다만, 단순한 취재 행위는 제외한다. 3.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운영 관리 한다.

② ~ ③ (생략)

제12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생략)

②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운영·관리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본사용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사용료 전액이 감면되는 경우

가. 국가·강원도(이하 “도” 라 한다)·평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공연 또는 일반 행사

나. 국가·도·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활동

2. 사용료의 50퍼센트가 감면되는 경우

가. 사용자가 공연연습이나 무대·전시설비 및 행사준비와 설비물의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군 지역 밖의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 행사

다. 군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자선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 되었을 때
3.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때
4.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신 설>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되는 경우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나.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때
다. 허가사용일 10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했을 때
2. 50퍼센트 반환의 경우
가. 허가사용일 5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회관의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발매목적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람권 등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판매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검사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하며,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10퍼센트로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생략)	제15조(사용자의 설비)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생략)	제16조(사용자의 변상책임) (현행과 같음)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생략)	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현행과 같음)
제17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생략)	제18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현행과 같음)
제18조(입장제한) (생략)	제19조(입장제한) (현행과 같음)
제19조(시행규칙) (생략)	제20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문화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 다. 화랑: 회화 · 서예 · 사진 · 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 · 매매하는 시설
-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관

-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나. 문고: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

4. 지역문화복지시설

-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 나. 복지회관: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그 밖에 각종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 · 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문화 보급 · 전수시설

-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 · 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그 밖의 문화시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문화시설 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 지방재정법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